

## 채무인수 통지서

채권자	나라	
채무자 (경락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전화번호

위 당사자 간의 법원 제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같은 법원에서 실시한  
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붙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에 낙찰  
받았습니다. 이에 따라 그 경락대금(매입대금) 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원은  
「민사집행법」 제143조제1항과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 
따라 매입금액의 지급을 갈음하여 경락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위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여  
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채권자 나라

위 대표자 국가보훈부장관

직인